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22. 9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목 차**

1. **감사 목적**
2. **감사 기간**
3. **감사 대상 기관**
4. **감사위원회 구성**
5. **감사 일정별 대상기관 및 장소**
6. **주요 감사 사항**
7.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8. **감사자료 제출요구**
9. **감사 요령**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1. 감사 목적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 및 부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자 함
- 자의적 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울시정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2. 감사 기간

- 2022. 11. 2.(수) ~ 11. 15.(화) <14일간>  
※ 제315회 정례회 : 2022.11.1.(화) ~ 12. 22.(목), <52일간>

## 3. 감사 대상 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6곳)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6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 변 인</li><li>○ 홍보기획관</li><li>○ 문화본부</li><li>○ 관광체육국 (서울시체육회 포함)</li><li>○ 서울역사박물관</li><li>○ 서울시립미술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li><li>○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li><li>○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li><li>○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li><li>○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li><li>○ 재단법인 미디어재단 티비에스</li></ul>

#### 4.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국민의힘	이 종 환	· 수석전문위원 주 우 철 · 의사지원팀장 우 명 섭
부위원장	국민의힘	김 원 중	· 전문위원 임 창 균 · 행정6급 이 은 성
	더불어민주당	유 정 희	· 입법조사관 이 지 영 · 입법조사관 박 지 혜
위 원	국민의힘	김 규 남	· 입법조사관 심 형 준
	국민의힘	문 성 호	· 행정7급 김 경 민 · 행정7급 홍 민 지
	국민의힘	이 종 배	· 사무운영7급 이 순 복 · 정책지원관 박 은 비
	국민의힘	이 효 원	· 정책지원관 홍 수 희 · 정책지원관 김 동 규
	더불어민주당	김 기 덕	· 입법지원관 이 원 재
	더불어민주당	아이수루	· 입법지원관 정 재 운
			· 속기 및 녹취 : 3명

## 5. 감사 일정별 대상기관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2022. 11. 2.(수)	1. 대 변 인	문체위 회의실
	2. 120다산콜재단	”
2022. 11. 3.(목)	1. 서울역사박물관	”
	2. 서울시립미술관	”
2022. 11. 4.(금)	1. 미디어재단티브이에스	”
	2. 홍보기획관	”
2022. 11. 7.(월)	자료정리	-
2022. 11. 8.(화)	1. 세종문화회관	”
	2. 서울시립교향악단	”
2022. 11. 9.(수)	1. 서울관광재단	”
	2. 관광체육국 (서울시체육회 포함)	”
2022. 11.10.(목)	자료정리	-
2022. 11.11.(금)	1. 서울문화재단	”
	2. 문화본부	
2022.11.14.(월)~15.(화)	자료정리	-

※ 감사일정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

## 6. 주요 감사사항

가. 감사방법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 나.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명	주 요 감 사 사 항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li> <li>○ 수입·지출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등</li> </ul>
대 변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각종 매체 보도내용 분석에 관한 사항</li> <li>○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기타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등</li> </ul>
홍보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시민소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시정간행물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li> <li>○ 홍보매체 발굴·관리에 관한 사항</li> <li>○ 120다산콜센터 상담운영에 관한 사항 등</li> </ul>
문 화 본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정책의 수립, 문화기반 조성,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사항 등</li> <li>○ 문화·예술·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진흥, 문화단체·예술단체·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li> <li>○ 한양도성 보존·복원·관리 및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li> <li>○ 미술관 등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li> <li>○ 박물관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 등</li> </ul>
관 광 체 육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정책의 수립 및 관광진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li> <li>○ 관광유치 및 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li> <li>○ 체육정책,전문체육 육성및 전문 체육시설 건립 등에 관한 사항</li> <li>○ 여가 진흥 정책 수립,생활체육 육성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등</li> </ul>
서 울 역 사 박 물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li> <li>○ 소장유물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유물 구입,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li> <li>○ 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li> <li>○ 전통문화 발굴 조사에 관한 사항 등</li> </ul>
서 울 시 립 미 술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계획 및 중장기 미술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li> <li>○ 미술관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li> <li>○ 국내외 미술관 교류 및 미술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등</li> </ul>

기관명	주요 감사사항
세종 문화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li> <li>○ 시설물관리 대여에 관한 사항</li> <li>○ 시립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등</li> </ul>
서울 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li> <li>○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li> <li>○ 문화예술 네트워크허브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li> <li>○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창조에 관한 사항 등</li> </ul>
서울시립 교향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향악단 운영 및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li> <li>○ 음악연주활동에 관한 사항</li> <li>○ 음악 및 공연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등</li> </ul>
서울 관광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관광자원 확대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서울의 관광경쟁력 강화 및 제고에 관한 사항 등</li> </ul>
120다산콜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 및 구정 통합 상담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정보채널 다양화를 통한 시민중심 상담 서비스에 관한 사항</li> <li>○ 전문상담에 최적화된 DB 시스템 구축 등</li> </ul>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T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티비에스의 프로그램 편성, 제작, 보도 등에 관한 사항</li> <li>○ 티비에스 효과분석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li> <li>○ 광고방송의 편성, 조정, 연구 및 광고계약에 관한 사항</li> <li>○ 티비에스의 수집·분석·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노후장비 교체 및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티비에스의 향후 비전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등</li> </ul>

## 7.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 자료제출

【 피감사기관은 감사자료 40부를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실적  
(2021. 11월 ~ 2022. 10월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 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
- 다. 2022년도 세입·세출 집행 현황
- 라.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마.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 바.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 8.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가.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 나. 각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첨 2」 서식의 “서류 (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
- 다. 위원장은 목록을 의장(의사담당관 참조)에게 **2022.10.4.(화)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 9. 감사실시 요령

### 가. 감사방법

- 1) 감사는 상임위원회 운영전반에 관한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 2) 특히 필요한 경우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시장 등의 출석 요구)

- 1) 문화본부장 등 3급 이상 공무원
- 2) 세종문화회관 사장 등 출연기관 임원
- 3)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 제4항을 적용함

###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 1)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조례 제8조)
- 2) 과태료 부과(조례 제9조)
- 3) 고발 및 준용사항(조례 제10조, 제11조)

## 다. 감사 진행순서

- ① 감사실시 선포(위원장)
- ② 위원장 인사
- ③ 피감사기관 선서
- ④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⑤ 업무현황보고 청취
- ⑥ 시책질의 및 답변(현지 확인, 증언청취 등)
- ⑦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 ⑧ 감사종료 선언

## 라. 유의사항

- 1)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규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 중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 감사의 한계)  
행정사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제척과 회피)

- ① 감사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감사위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주의 의무)

- ① 감사위원은 감사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공개 원칙)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결로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가. 방 침

-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 나. 작성방법

-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 2) 감사 직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
- 3)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하여 **2022.12.07.(수)**까지 운영위원회에 송부
- 4)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결과 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 결과 보고서를 채택
- 5) 본회의 의결

- ※ 붙임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요구목록 서식 1부
  3. 감사 결과 의견서 1부.

[붙임 1]

##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붙임 3]

## 감사결과 의견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